

2019년 8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역방역과 과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사무관 신만섭(2532) / 제공일: 8월 26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2019년 8월 27일, 「수의사법」 개정안 공포 -

◇ 「수의사법」 개정안이 2019.8.27. 공포

- 이번 개정으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'동물보건사' 제도를 '21.8.28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
- '20.2.28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하게 동물용의약품 관리할 계획임

< 주요 개정 내용 >

- **동물보건사 제도 도입(2년후 시행)** : 동물보건사 명칭, 업무 범위, 시험 및 응시자격, 양성기관평가인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마련
- **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(6개월후 시행)** :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기존 수기처방전 발급과 병행하던 것을 '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'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
- **무자격자가 동물병원 개설 시 처벌 규정 신설(6개월후 시행)** : 동물병원 개설 자격*이 없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

* ① 수의사, ② 국가 또는 지자체, ③ 동물진료법인, ④ 수의대, 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)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“동물보건사 제도 도입” 및 “전자처방전 의무화”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수의사법」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.
- “동물보건사 제도”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다.
 - 현행 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, 이번 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“동물보건사”라는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.
 -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,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.
 -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*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* ①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, ②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, ③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
- 또한,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‘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’ 및 ‘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’ 규정을 마련하였다.

-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,
 -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적발하여 처벌할 예정이다.
-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분야 전문 직종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,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【붙임】 수의사법 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

구 분 (시행일)	주요 개정 내용
제2조제3의2호 (2년 후 시행)	○ 동물보건사 명칭 정의 - “동물보건사”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
제16조의2 (2년 후 시행)	○ 동물보건사의 자격 - 다음*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* ①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②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(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)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 1년이상 종사자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소유자
제16조의3 (2년 후 시행)	○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- 자격시험은 매년 시행하고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- 자격시험 실시 등에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함
제16조의4 (2년 후 시행)	○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-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(이하 양성기관)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-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*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 *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, ②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제16조의5 (2년 후 시행)	○ 동물보건사의 업무 -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함
제16조의6 (2년 후 시행)	○ 동물보건사 관련 준용규정 -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, 제6조, 제9조의2, 제14조, 제32조 제1항제1호·제3호, 제32조제3항, 제34조, 제36조제3호를 준용* * “수의사”는 “동물보건사”로, “면허”는 “자격”으로, “면허증”은 “자격증”

구 분 [시행일]	주요 개정 내용
부칙 (2년 후 시행)	○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- 다음*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* ①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, ②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, ③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
제12조의2 (6개월 후 시행)	○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화 -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 부터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 - 약품을 직접 처방·조제·투약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,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
제12조의3 (공포시 시행)	○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근거 마련 * 「수의사법 시행규칙」에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
제39조제1항제3호 (6개월 후 시행)	○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벌칙 규정 - 동물병원 개설할 수 있는 자*가 아닌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* ① 수의사, ② 국가 또는 지자체, ③ 동물진료법인, ④ 수의대, 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
제41조제2항 제1의6호 (6개월 후 시행)	○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- 다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* 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 시, ②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, ③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, 용법 및 용량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